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병설데이케어센터 이용 안내★

1. 이용 안내

- 가. 이용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어르신
노인성질환 어르신(※단, 차량탑승가능한 어르신)
- 나. 이용시간 : 월~금요일(주·야간보호 : 07시 30분 ~ 22시)
토요일(주간보호 : 09시 ~ 18시)
- 다. 이용정원 : 24명
- 라.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건강진단서(전염성질환),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수급권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이용자와 보호자가 필히 함께 내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마.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지원	일반(본인부담 15%)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지원
3~6시간	39,810	36,850	34,020	32,470	30,920	30,920	5,972	5,528	5,103	4,871	4,638	4,638
6~8시간	53,360	49,420	45,620	44,070	42,500	42,500	8,004	7,413	6,843	6,611	6,375	6,375
8~10시간	66,360	61,480	56,760	55,210	53,640	53,640	9,954	9,222	8,514	8,282	8,046	8,046
10~13시간	73,110	67,720	62,570	61,000	59,450	53,640	10,967	10,158	9,386	9,150	8,918	8,046
13시간이상	78,400	72,630	67,100	65,540	63,990	53,640	11,760	10,895	10,065	9,831	9,599	8,046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 :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일반 - 건강보험공단 85% 지원, 본인부담금 15%

※경감 - 건강보험공단 94% 지원, 본인부담금 6% / 건강보험공단 91% 지원, 본인부담금 9%

※수급자 - 건강보험공단 100%

※등급외자 1일 이용료 26,020원: 주간 종식비 포함, 석식비 별도

예) 4등급 8시간 이용시 (일 8,282원/중·간식 5,000원)

20일 이용 : 이용료 13,282원 (일 8,282원+ 중·간식 5,000원)×20일 = 265,640원

※이용료는 후불로 계산되며 매월 15일까지 전월분을 아래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010901-04-276245 (예금주: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병설주간보호센터)

2. 기타 안내

가. 본 센터는 이용시설로서 연중 지속 이용하실 수 있는 센터이나, 타 이용자의 이용을 위해서 장기간 미이용시(3주이상) 차순위 대기자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질할 및 기타사정으로 인해 장기간 미이용시에는 필히 사전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송영차량 이용자는 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거나 시간의 변동을 요할 경우 필히 사전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호차 (78무 4754)	010-6584-3665	2호차 (78무 4899)	010-6684-3665	병설주간보호센터	02-963-2020
-------------------	---------------	-------------------	---------------	----------	-------------

다. 이용자가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욕설, 폭언, 폭행 및 유사행위)을 할 시에 보호자에게 연락을 드리며, 보호자는 이용자의 상태에 따라서 의사처방 등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하며, 이용자의 상태가 심해질 경우 계약해지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타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가족요양 등)을 이용할 경우 필히 사전에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재가요양급여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호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데이케어센터 이용에 대한 문의 혹은 건의 사항이 있으신 보호자께서는 전화, 의견함,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3.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나. 급여의 범위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다. 계약자의 의무

‘이용자’와 ‘센터’ 그리고 ‘보호자’는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
-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④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 ‘센터’의 의무

- ①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 ② 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 ⑤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 ⑥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 ⑦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⑧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⑨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 ‘보호자’의 의무

-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정보제공 의무
-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의무
-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센터에게 통보
- ④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게 통보
- ⑤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라. 계약해제 요건

- 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한 경우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기 아니하였을 때

마. 계약의 해지

- ① 이용자와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개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

바. 미이용 비용산정

- ①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한다.

사.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②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③ 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 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 할 수 있다.
- ④ 센터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⑤ 센터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아. 배상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센터가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 ① 센터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센터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④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센터에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 ② 센터에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④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⑤ 센터의 이용도중 직원들이 이용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 ⑥ 이용자는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분실하게 되었을 때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병설주간보호센터